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서 ‘정주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인정된 사례 및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2012년 7월

법무성 입국관리국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의 4 제1항 제7호에 열거하는 사실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계속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을 것(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당 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 판명되어 체류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또는 영주허가 신청의 기회를 주도록 배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관법 제22조의5 참조)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는 상기 입관법 제22조의5의 취지 등에 근거하여 운용 투명성 향상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2011년도 중에 체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서 ‘정주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인정된 사례 및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변경을 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입관법 제20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대신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입국관리국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외국인이 하려는 활동, 체류 상황, 체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하고 있으며, 별첨에 있는 사례와 유사한 경우라 해도 결론이 다르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례를 계속 추가해 갈 예정입니다.

1. '정주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인정된 사례

	성별	일본 체류기간	전 배우자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사별·이혼 여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자녀가 있는지 여부	특기사항
1	여성	약 6년	일본인 (남성)	약 6년 6개월	이혼	일본인 친자녀 (친권은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인 친자녀를 감호·양육한 실적 있음 방문 개호원으로서 일정한 수입 있음
2	여성	약 5년 1개월	일본인 (남성)	약 3년	사실상 파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름 구체적인 이혼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나, 현재 별거 중이거나 양쪽이 이혼의사를 분명히 밝힘. 간호조무사로서 일정한 수입 있음
3	남성	약 13년 8개월	특별영주자 (여성)	약 6년 1개월	사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용접사업 경영을 계속할 필요 있음 금속용접사업을 경영하며 일정한 수입 있음
4	여성	약 8년 1개월	일본인 (남성)	약 4년 5개월	이혼	일본인 친자녀 (친권은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이혼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함 일본인 친자녀를 감호·양육한 실적 있음
5	여성	약 10년 5개월	일본인 (남성)	약 11년 5개월	사실상 파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통산 8년 이상 별거(동거 기간은 통산 약 2년) 배우자가 신청인과의 연락을 거부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
6	여성	약 8년 8개월	영주자 (남성)	약 6년	사실상 파탄	외국인(영주자) 친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3년 이상 별거 자녀의 친권 문제로 분쟁이 있어 이혼조정 불성립, 이혼소송 준비 중
7	남성	약 8년 3개월	일본인 (여성)	약 7년 9개월	이혼	일본인 친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인 친자녀에 대해 매월 3만 엔의 양육비를 계속하여 지급 회사원으로서 일정한 수입 있음 친권자는 전 배우자

2. '정주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성별	일본 체류기간	전 배우자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사별·이혼 여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자녀가 있는지 여부	사안 개요
1	남성	약 4년 10개월	일본인 (여성)	약 3년	이혼	일본인 친자녀 (친권은 전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기 및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2	남성	약 4년 1개월	영주자 (여성)	약 3년 11개월	사실상 파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홀로 약 1년 9개월에 걸쳐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 체류
3	여성	약 4년 1개월	일본인 (남성)	약 3년 10개월	사망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홀로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 체류 일본 체류 중에도 전 배우자와 별거하며 성매매업소에서 돈벌이를 함
4	여성	약 3년 4개월	일본인 (남성)	약 1년 11개월	이혼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번째 이혼 첫 번째 이혼 시에 전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며 보호를 요청했으나, 얼마 안 가 전 배우자와 재결함.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은 이혼과 재결함을 반복했던 시기를 포함해 약 1년 11개월
5	여성	약 4개월	일본인 (남성)	약 3개월	이혼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청 혼인 동거 기간은 3개월 미만

6	여성	약 3년 3개월	일본인 (남성)	약 2년 1개월	이혼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청· 일본어 학교에 다니려고 배우자와 별거했으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됨·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년 3개월
---	----	----------	-------------	----------	----	----	---